
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22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실장)

-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3만원씩 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·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 지급.
- 국가기관, 지자체 등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위탁(허가) 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한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과 유가족의 생업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면서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
-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판기 등을 허가(위탁)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하여 생업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단체를 지원하고자 각종 시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
조례안 1부